

제 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¹⁾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경산노인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으로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방법)

-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없을때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② 급여 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 자료집을 제공한다. 또한, 본인부담금 미납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최초 서비스 시작일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8호

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 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상위계층에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며, 나머지 94%,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 (계약의 해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 수혜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1)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③ 요양보호사의 의무

요양보호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 1)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 2)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 3)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 4) 수급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가 한다.
 - 5)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 6)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활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 7)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 8)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직원회의와 급여제공지침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 9)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 10) 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항상 지참하도록 한다.

제7조 (이용절차)

- ①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접수한다.
- ② 신청·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방문상담, 개인 정보활용동의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8조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2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9조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②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③ 정서지원
말벗, 격려
-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제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 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상위계층. 감경에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며, 나머지 94%,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 ②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재가급여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약값과 동행 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을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매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및 방문요양급여 비용은 연도별 수가표의 금액으로 한다.
- ④ 감경대상자의 감경비율결정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전산에 있는 자격에 따라 결정하며 자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서 2부 작성 각각 수급자(또는보호자)와 한 부씩 보관한다.
- ⑤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터에서 수급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⑥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요구 할 경우 발급 해 주어야 한다.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 01. 01 기준)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비고
급여 총액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1일 270분이상 월8일만 가능(1,2등급). 3,4등급은 월4회 -1일 240분이상 1,2등급 가능 -1일 3시간 이하 근무시 일3회 방문 가능함 -공휴일50% 가산 -심야20시-06 이용 30%가산
본인부담금 (15%)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2018.08.01.,부터 적용 -본인부담15%,9%,6%,
본인부담금 (9%)	1,570	2,278	3,070	3,909	4,557	5,131	5,718	6,307	
본인부담금 (6%)	1,047	1,519	2,047	2,606	3,038	3,421	3,812	4,204	
방문 횟수	144	99	73	57	49	44	39	35	1등급
	133	92	68	53	46	40	36	33	2등급
	87	60	44	35	30	26	*	*	3등급
	80	55	41	32	27	24	*	*	4등급
	*	*	35	27	23	21	*	*	5등급

*가족요양인 경우 1일 1시간 또는 1.5시간 인정함. 1일 수가 24,580원. 33,120원

■ 방문목욕

등급	차량이용차량내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가정내	비고
급여총액	88,990	80,230	50,100	요양보호사 2인 1회 60분이상
본인부담(15%)	13,349	12,035	7,515	
본인부담(9%)	8,009	7,221	4,509	
본인부담(6%)	5,339	4,814	3,006	

■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비고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15%)	376,935	349,680	229,230	211,455	181,335	주간보호	
본인부담(9%)	226,161	209,808	137,538	126,873	108,801		
본인부담(6%)	150,774	139,872	91,692	84,582	72,534		